

<서식 제2호>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				
위임장	위임을 받는 자	한글	생년월일	
	주 소			
	위임 사유	위임자와의 관계		
본인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				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	
위임자 : (서명) (생년월일 : ) 주 소 :				
법정대리인동의서	(성명 : )에 대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동의합니다.			
	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
	법정대리인 :	(서명)	(생년월일 : )	관계 :
주소 :		연락처		
<b>* 유의사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정대리인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,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.</li> <li>2. 위임장의 상단에는 피위임자(위임을 받는 자)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</li> <li>3.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위임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4.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, 피위임자(위임자)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[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)]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</li> <li>5.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(예 :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벌금받은 자 등)는 「형법」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6.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.</li> <li>7. 위임자, 법정대인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			